

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(F-1-9) (호구지 관할 공관에 신청)

신청 요건:

F-1-9: 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
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국민 또는 거주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. 1년 이내 단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 준비 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무범죄증명서(만18세이상 60세 미만, 최초 방문자에 한함)
4. 혼인관계증명서
 - 미성년자(19세 미만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증명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)
5. 결핵 진단서(당관 지정기관 발행)
6. 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한 자의 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 사본
7. 가족관계 입증서류 : 혼인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
8. 주거요건 및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
 - 주거요건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)
 - 소득요건 입증서류(재직증명서, 급여통장 또는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등)